

## 2019년도 두루누리 지원기준 변경 안내

- '18.12.27. 보건복지부 「소규모 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등에 관한 고시」가 개정됨에 따라 '19.1.1.부터 **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**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< 주 요 내 용 >

구 분		변경 전(2018년)	변경 후(2019년)
<b>소득기준</b>		· 190만원 미만	· 210만원 미만
<b>제외 기준</b>	근로소득	· 연 2,508만원 이상	· 연 2,772만원 이상
	종합소득	· 연 2,280만원 이상	· 연 2,520만원 이상
<b>신규 가입자</b>	<b>인정 요건</b>	· '18.1.1. 이후 국민연금 최초 가입자 · '18.1.1. 이후 취득자로서 <b>1년간</b>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자	· '18.1.1. 이후 국민연금 최초 가입자 또는 <b>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</b>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자 - 단, 법정 자격신고 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는 신규로 지원
	<b>지원 수준</b>	· 사업장규모 (1~4인) 90% 지원, (5~9인) 80% 지원 ※ 사업장규모 :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,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전체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규모 판단(단, 공동주택관리사업은 각 사업장별로 판단)	
<b>지원기간</b>		· 지원기간 제한 : '18.1월 이후 36개월(신규 + 기존)	· 지원기간 제한 : '18.1월 이후 36개월(신규 + 기존) - 기존(40% 지원받는 자)은 <b>'20년 12월 보험료까지만 지원('21년부터 지원중단)</b>

- 특히, 신규가입자의 경우 근로자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법정 자격신고 기한까지 취득신고 및 지원신청한 경우에 한해 신규(80% 또는 90% 지원)로 지원하므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(예시) **신규가입자로 '19.01.01. 사업장에 입사한 근로자**에 대한 자격취득신고 및 사업장 보험료지원신청 구분에 따른 지원율 차이

<b>보험료지원중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</b>	'19.02.15.이내 취득신고	→ 신규(80%/90% 지원)로 지원
	'19.02.16.이후 취득신고	→ 기존(40%)으로 지원
<b>지원 미신청중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</b>	'19.02.15.이내 취득신고 및 지원신청	→ 신규(80%/90% 지원)로 지원
	'19.02.16.이후 취득신고 또는 지원신청	→ 기존(40%)으로 지원

- 국민연금 보험료지원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(국번없이 1355),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(1588-0075)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.